

##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

2020년 9월호

### 1. 법률

가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
가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

나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

다. 금융투자업규정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
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
다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라.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

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

나.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

## 1. 법률

가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 등)

## 1. 법률\*

가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0/8/25 제정 · 2020/8/27 시행)<sup>1)</sup>

### 1) 제정 이유

□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6656호, 2019. 11. 26. 공포, 2020. 8. 27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요건(제3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는 자는
  - 직전 연도 말을 기준으로 연계대출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의 자기자본
  - 연계대출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0억원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요건을 정함

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준수사항(제11조 및 제12조 등)

- 차입자가 신청한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 모집되어 있는 등의 경우에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함
  -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에 대한 원리금을 다른 투자자들의 원리금에 우선하여 회수하지 않도록 함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수수료 외의 금원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
-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

□ 청산업무 처리절차의 마련(제25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영업 중단 등에 대비하여 원리금 상환 · 배분, 연계대출채권의 관리, 투자금이나 상환금의 관리, 연계투자 및 연계대출 계약의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도록 함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27조 제6항 · 제7항, 같은 조 제8항 제2호, 제28조 및 부칙 제4조 제2항 · 제8항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

## □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(제27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과 70억원 중 적은 금액만큼만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함
- 개인투자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총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투자자별 투자한도를 규정

## 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업무(제32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업무질서 유지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직무 및 윤리교육에 관한 업무, 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

## 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

- 가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(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등)
- 나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(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및 연계투자 계약 제한 등)
- 다. 금융투자업규정 (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)

## 2. 금융위원회 · 금융감독원 규정\*

### 가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(2020/8/27 제정 · 시행)<sup>1)</sup>

#### 1) 제정 이유

-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2020. 8. 27 시행)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##### □ 등록요건(제4조, 별표 1, 별표 2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, 사업계획, 대주주,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요건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
- 인력에 관한 요건
  -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
  - 정보처리기술사,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그 밖에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상기 인력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자
- 물적 설비
  -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
  - 업무공간과 사무장비
  - 보안설비
- 사업계획
  - 내부통제장치 및 이용자 보호
  - 법령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준수
-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33조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

## 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(제8조)

- 부실채권 매각, 연체율이 100분의 15를 초과한 경우, 금융사고 및 손해배상의 확정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법인이나 그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날까지 공시하는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

## □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관련 준수사항(제10조)

- 연체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할 경우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가 제한
- 동일 차입자에 대한 자기의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 금액의 총합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로 할 것
- 주택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의 경우 담보인정 비율을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등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관련 준수사항을 규정

## □ 연계대출 · 연계투자 계약의 제한(제13조)

- 금전의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, 원리금수취권, 그 밖에 투자위험성이 높은 자산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에 대한 연계대출 · 연계투자 계약 체결을 제한
- 대부업자, 복수의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연계대출 계약 체결을 제한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특수관계인과 연계투자 계약은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연계투자의 범위 내에서만 연계투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

## □ 투자금 및 상환금의 관리 등(제29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금등의 보관 및 처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예치기관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등 투자금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

## □ 손해배상책임(제31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최소 보장금액 또는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규정
  - 연계대출규모에 따라 5천만원, 1억원, 3억원으로 구분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

## □ 연계투자금액의 산정 등(제33조)

- 연계투자금액은 투자자의 연계투자금액에서 연계대출 상환금 중 해당 투자자의 연계투자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과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경우 해당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연계투자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
-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한 총 연계투자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정
  -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연계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총 1천만원으로 한정

## 나.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(2020/8/27 제정 · 시행)

### 1) 제정 이유

- 「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2020. 8. 27 시행) 과 동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#### 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(제3조)

- 규정 제8조 제4항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정공시정보는 내용 전부를 페이지 이동 없이 한 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함
- 법정공시정보를 공시함에 있어 이용자가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접속할 때마다 정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만 온라인플랫폼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것

#### □ 연계대출 · 연계투자 계약의 제한(제5조)

- 규정 제13조 제1호 다목에서 투자위험성 등이 높은 자산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
  -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(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)
  - 파생상품
  - 한국거래소에서 투자경고 종목 또는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한 상장주식
  - 연체 채권 등 부실 유가증권
  - 사행기구, 투전기, 사행성 유기기구, 카지노 칩스(chips),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· 무형의 결과물
  -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거래 등을 금지하고 있거나, 객관적 가치평가가 곤란한 경우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것

#### □ 내부통제기준의 마련(제9조, 제10조)

-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신용평가업무, 정보제공기준에 관한 업무, 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 · 보호에 관한 업무,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업무, 민원 및 분쟁의 처리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함

## 다. 금융투자업규정 (2020/8/27 개정 ·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자본시장법 제4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행사하는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향후 조치명령권 행사의 법적 안정성 및 피조치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조치명령권의 세부기준(제2-14조의2 신설)
  -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으로 수단의 보충성, 침해 최소성, 명확성을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함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### 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시가총액 중심의 경영성과 요건의 심사기준 구체화 등)
- 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관리종목 지정·해제시기의 변경)
- 다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경매매 신청요건 완화)
- 라.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(경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의 채권시장 매매거래 참가 범위)

## 3. 한국거래소 규정\*

###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0/8/25 개정 · 2020/9/1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형식적 심사요건 중 수익성 기준을 세전 이익으로 일원화(2019.6.26 규정 개정)한 것과 관련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이익액의 정의 명확화(별표 2의2 제2호 가목 1) 가) (1))
  - 이익액의 질적심사는 2019년 6월 26일 규정 개정 전과 같이 영업이익,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및 비지배지분을 제외한 순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시적으로 규정
- 시가총액 중심의 경영성과 요건의 심사기준 구체화(별표 2의2 제2호 가목 1) 가) (6))
  - 사업계획상 성장전략 및 실현 가능성 여부, 자금사용 계획의 적정성, 미래 경영성과 개선 가능성 등 성장형기업의 미래성장성 심사기준을 마련

### 나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0/8/25 개정 · 2020/10/1 시행)

#### 1) 개정 이유

- 저유동성 우선주의 이상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종류주식 진입·퇴출기준 정비에 따라 관련 세칙 사항 등을 개정하기 위함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종량주식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(제33조의6)

- 상장주식수 및 시가총액 관련 퇴출기준 상향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·해제시기 변경
  - 상장주식수 미달로 인한 종량주식의 관리종목 해제시기: 최근 반기말이나 사업연도말의 상장주식수가 (기존) 5만주 → (개정) 20만주 이상인 것이 확인된 날의 익일
  - 시가총액 미달로 인한 종량주식의 관리종목 해제시기: 시가총액이 (기존) 5억원 → (개정) 20억원 이상인일 일수가 10일 이상 계속된 날의 익일, 시가총액이 (기존) 5억원 → (개정) 2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인 날의 익일

## 다.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0/8/5 개정 · 2020/9/7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경매매제도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청요건 등을 완화하고, 「벤처투자법」시행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### □ 경매매 수량요건 등 경매매 신청요건 완화(제35조)

- 경매매를 위한 최소 신청 수량요건을 발행주식총수의 (기존) 2% 이상 → (개정) 1% 이상 및 (기존) 1억원 → (개정) 5천만원(기준가격×신청수량) 이상으로 완화
- 경매매 신청기간을 (기존)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6시 30분까지 → (개정) 3매매거래일 전일 및 직전 매매거래일의 장종료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확대
  - 3매매거래일 전일에 경매매신청, 직전 매매거래일에는 신청요건 확정

## 라.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(2020/8/3 개정 · 2020/8/7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겸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의 채권시장 매매거래 참가범위 및 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회원관리 및 시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

## 2) 주요 내용

- 경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 등의 거래참가범위(제8조 제1호)
  - 경영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 등이 거래할 수 있는 채무증권의 최대 범위를 일반 채무증권전문회원과 같이 모든 채무증권으로 확대
  - 경영금융투자업자도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인가범위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와 같이 채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, 금융투자업자인 채무증권전문회원과 참가시장 범위의 형평성을 도모
  - 세부 거래참가 범위는 금융위원회의 인가조건 및 관련 영업활동 범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

## 4. 금융투자협회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가중평균만기 규제 도입 등)
- 나.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(레버리지 ETN 투자자의 사전교육 의무화)

## 4. 금융투자협회

### 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(2020/8/18 개정 · 시행, 2020/8/20 개정 · 2020/9/7 시행)<sup>1)</sup>

#### 1) 개정 이유

- 「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」(금융위원회, 2020. 4. 27)에 따라,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의 상환·환매의 원활을 기하고, 투자신탁 등에 대한 결산보고서 제출 및 수시공시 관련 조문에 법령 반영 미비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
- 금융위가 발표한 「ETF·ETN시장 건전화 방안(2020. 5. 18)」에 따라, 레버리지 ETF·ETN을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(전문투자자 등 제외)에 대한 사전교육 의무 부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가중평균만기 규제 도입(제8-13조 신설)
  -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편입 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은 제외)의 가중평균잔존만기보다 짧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
  - 가중평균만기 산정시 현금화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협회장이 정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협회장이 정하는 별도의 날을 만기일로 할 수 있도록 함
  - (적용대상) 공모집합투자기구, 적격투자자 중 일반투자자가 투자자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
   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협회장이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
- 투자신탁 등에 대한 결산보고서 및 수시공시 관련 조문 정비(제4-63조 제2항, 제4-65조 제1항)
  - 투자회사 등과 동일하게 투자익명조합의 청산시에도 결산보고서를 본회에 제출하도록 함
    - 자본시장법 제227조 제3항, 제221조 제6항, 제203조 제5항 반영

\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8-1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부터 시행, 제4-63조 제2항, 제4-65조 제1항은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.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2-5조의3 제1항 제2호의 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를 설정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

- 소규모펀드에 대한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-67조의2에서 정하는 방법으로도 공시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
  - 발생일이 속하는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일괄하여 공시

□ 투자자의 적격성 확인 등(제2-5조의3 제1항)

-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고 그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
  - 주식워런트증권
  -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(음의 배율을 포함한다)로 연동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·상장지수증권
- 다만, 해당 투자자가 법인·단체, 외국인, 투자일임계약 또는 금전신탁계약(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에 따라 거래하려는 자인 경우에는 예외

## 나. 상장지수증권 위험고지서 (2020/8/20 개정 · 2020/9/7 시행)

### 1) 개정 이유

- 금융위 ‘ETF·ETN시장 건전화 방안’(2020. 5. 18.)과 관련한 ETN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
  - 최근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(ETN) 등에 대한 괴리율 확대 및 쓸림투자 현상으로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투자자 손해 발생

### 2) 주요 내용

- 레버리지 ETN 매수주문에 대한 기본예탁금
  - 초기자금 요건을 두어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시장진입 차단
- 레버리지 ETN 투자자의 사전교육 의무화
  - 개인인 위탁자가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(음의 배율을 포함한다)로 연동하는 ETN을 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전교육 의무화
    - 전문투자자, 외국인, 투자일임계약 또는 비지정형 금전신탁계약에 따라 거래하려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사전교육 대상에서 제외

□ ETN 투자유의종목 지정시 매매체결방법 변경 및 매매거래 정지 가능

- 거래소는 투자자의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ETN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서 매매체결방법 변경 또는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음

□ ETN 조기청산에 따른 상장폐지 가능

- 거래소가 정한 비이상적 시장상황 발생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기청산 및 상장폐지 허용

〈비이상적 시장상황〉

조기청산 사유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(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표 2의5)

- 정규시장 종료시 실시간 증권당 지표가치(장종료시점 실시간 지표가치(IIV)가 전일 대비 80% 이상 하락한 경우
- 장종료시점 IIV가 1,000원 미만인 경우
- 장종료시점 IIV 기준 괴리율이 +100% 이상인 경우
- 기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fi.re.kr)